

#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 모델

서울특별시



# 목 차

---

I. 국가경찰 현황	1
II. 자치경찰 도입의 필요성	2
III. 자치경찰의 의의 및 역대정부 논의	3
IV. 제주자치경찰 현황 및 평가	4
V. 새정부 자치경찰 시행관련 경과 및 동향	8
VI. 경찰청 자치경찰제 권고안과 평가	9
VII.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 현황	12
VIII.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 모델	16



# I

## 국가경찰 현황

□ **현황** : 정원 11만여명, 예산 9조 4천억('15년 기준, 경찰통계)

- 본청과 17개 시도별 지방경찰청, 252개의 경찰서, 1,995개의 파출소 설치·운영
- 정원은 113,077명으로 **현장에 필요한 방법·수사·교통인력이 다수(78.6%)**

구분	계	경무	생활안전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외사	김사	홍보	정보통신	지구대 파출소	기타
인력(명)	113,077	3,235	12,622	19,900	9,675	10,775	3,463	2,050	1,251	1,565	174	1,335	46,533	490
비율(%)	100	2.9	11.2	17.6	8.6	9.5	3.1	1.8	1.1	1.4	0.2	1.2	41.2	0.4

○ 예산은 9조 3,865억이며 **인건비가 7조가 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76.3%)**

구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	책임운영기관	광역시·도
기본경비(4.2%)	3,963	3,925	-	38	-
주요사업비(19.4%)	1조 8,185	1조 6,886	799	308	192
<b>인건비(76.4%)</b>	<b>7조 1,707</b>	7조 1,380	-	327	-

### <서울지방경찰청 조직도: 붙임 1(p20)>

○ 서울청 : 7부, 18과, 1실(종합상황실), 3대(지하철경찰대 등), 2,247명/ 서울지역 : 27,087명(31개 경찰서 포함)

경무부	생활안전부	수사부	교통지도부	경비부	정보관리부	보안부
<b>경무과</b> - 경무계 - 기획예산계 - 조직법무계 - 경리계 - 청사관리계 - 복지계	<b>112종합상황실</b> <b>생활안전과</b> - 생활안전계 - 한강경찰대	<b>수사과</b> - 수사1계 - 수사2계 - 수사이의조사팀 <b>지능범죄수사대</b> - 지능수사1계 - 지능수사2계 - 지능수사3계 - 해양수사계	<b>교통관리과</b> - 교통기획계 - 교통시설운영계 - 면허계	<b>경비1과</b> - 경비1계 - 경비2계 - 경비3계 - 의경계	<b>정보1과</b> <b>정보2과</b>	<b>보안1과</b> <b>보안2과</b> <b>외사과</b>
<b>인사교육과</b> - 인사계 - 교육계	<b>생활질서과</b> - 생활질서계 - 풍속단속계 <b>여성청소년과</b> - 여성보호계 - 아동청소년계 - 여성수사계	<b>형사과</b> - 강력계 - 폭력계 - 과학수사계 <b>광역수사대</b> - 광역수사1계 - 광역수사2계 - 마약수사계	<b>교통안전과</b> - 교통안전계 - 교통조사계 - 종합교통정보센터 - 교통순찰대 - 도시고속순찰대	<b>경비2과</b> - 작전계 - 대테러계 - 경호계 - 외빈경호대 - 항공대		
<b>정보화장비과</b> - 정보화장비기획계 - 정보통신운영1계 - 정보통신운영2계 - 장비계	<b>지하철경찰대</b> - 지하철행정계 - 수사1계 - 수사2계	<b>사이버안전과</b> - 사이버안전계 - 사이버수사대 - 디지털포렌식계				

## II

## 자치경찰 도입의 필요성

-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종합행정체제 구축으로 지방분권 실현
  - 지방자치, 교육자치의 실현에도 불구하고 치안은 여전히 국가경찰체제 유지
    - 이로 인해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과정에서 경찰과의 협업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업무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함 ※ 지하철 보안관- 지하철경찰대 등
  - 특히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보호와 방범·교통 분야 연계는 큰 시너지 효과 발휘
- ⇒ ◇ 주민과 가까운 자치경찰이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받는 시스템 필요
  
- 일반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 경찰행정 실현
  - 국가경찰은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
    - 주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치안서비스 보다는 국가의 존립과 유지에 필요한 경비, 정보, 외사 등에 인적·물적 자원 투입 ※ 비권력적 치안서비스는 지자체가 제공
  - 국가경찰의 관료화로 인한 경직성과 일선경찰의 사기 저하는 서비스 질 저하로 연결
- ⇒ ◇ 질서유지라는 소극적 역할을 넘어 주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 역할로의 전환필요
  
- 지역 맞춤형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주민의 참여와 통제 실천
  - 국가경찰의 획일화된 운영으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미흡
    - 국가경찰은 속성상 마약, 조직폭력, 테러와 같은 전국적 범위의 강력사건이나 정보 업무 등에 집중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서비스 제공 부족
  - 또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거나 경찰행정을 지역주민이 통제하는 기회도 갖기 어려움
- ⇒ ◇ 지역을 잘 아는 자치경찰이 지역수요를 반영한 적실성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Ⅲ

## 자치경찰 의의 및 역대 정부의 논의

### □ 자치경찰제 의의와 연혁

- (의의)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해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연혁) **대륙법계는 국가경찰의 보조로, 영미법계는 경찰을 자치경찰로 인식**
  - 대륙법계는 경찰은 국가권위의 대변자이므로 국가경찰을 중심으로 일부 자치경찰을 도입하는데 반해,
  - 영미계는 대부분의 경찰업무를 자치경찰이 하고 전국적 수사와 통제가 필요한 경찰업무만 제한적으로 국가경찰이 수행

### □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제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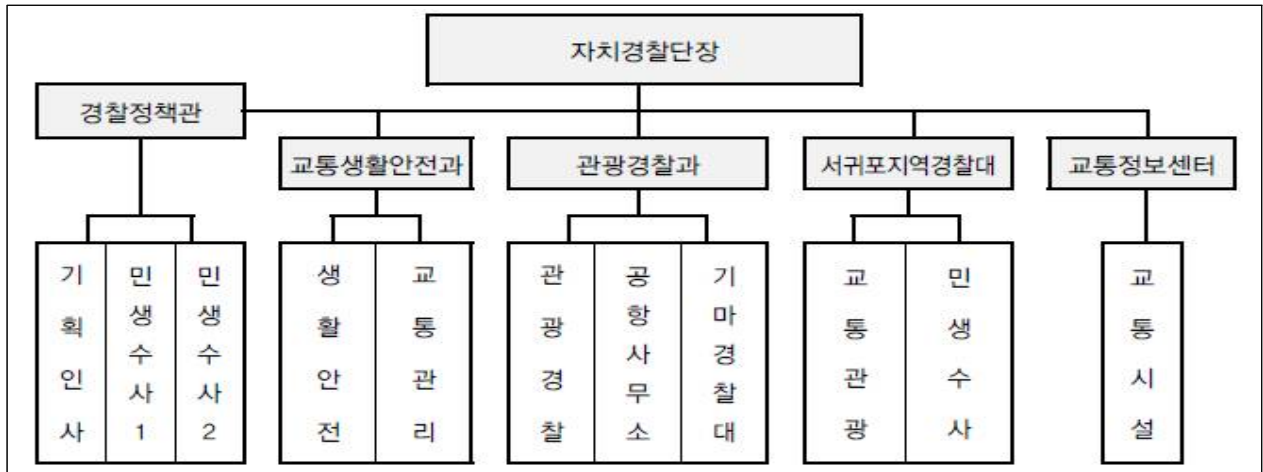
- 80년대부터 자치경찰제 논의가 있어왔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90년대 후반부터 시작
- 김대중 정부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모델
  - 국무총리산하에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청을 통제.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시·도도 동일한 시스템)
  - 광역단위 자치경찰은 관할구역에서 국가경찰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 처리
- 노무현 정부 :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모델
  - 기초단위인 시·군·구에 자치경찰을 두어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추진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상호 업무협조를 위해 치안행정위원회를 설치. 소요재원은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제도정착시까지 지원(국고보조금 등)

※ '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 도입(국가경찰을 유지하는 보조적 역할)
- 이명박 정부 : **혼합형** 자치경찰제 모델
  - 국가경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단위에서 자치경찰 도입. 다만 광역단위의 범집행강화와 기초단체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시도에도 자치경찰 권한 부여
- 박근혜 정부 : 구체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부재

# IV 제주 자치경찰의 현황 및 평가

## □ 현 황

○ '06년 최초 도입된 이래, 현재 1단 1관 3과 1대 1센터 체제로 운영중



○ 현재 현원은 125명(출범시 국가경찰 38명 포함)이고 정원은 130명임

구분	총계	자치경찰공무원	일반공무원		
			계	일반직	공무직
정원	150	130	19	11	9
현원	145	125	20	12	8

○ 예산은 국가 지원액 38억원과 도비 68억원으로 총 106억원임

- 국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제주도 계정으로 세입편성되고 있고, 자치경찰 이체 인력 인건비로 28억, 운영비 10억으로 구성

○ 사무는 제주특별법에 생활안전, 교통, 경비, 특사경 업무 등이 규정

- 제주특별법 제90조는 생활안전 등 자치경찰사무를 열거적으로 규정
  - ▷ 생활안전 :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운영, 주민방범활동 지원, 재해로부터 주민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폭력예방 등
  - ▷ 지역교통 : 교통안전과 소통관련 사무, 교통법규위반 단속, 주민참여 교통활동 지원
  - ▷ 지역경비 :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의 경비
  - ▷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도로교통법 등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



## □ 그간의 성과

### ○ 권역 순찰 및 범죄예방 교육 등으로 생활안전 치안서비스 제공

-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한 9개 권역과 초·중·고 19개 학교에 대해 순찰 및 방법활동을 시행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 수행

### ○ 교통관리 및 질서유지 활동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노력

- 교통법규 위반 1,814건, 음주운전 적발 49건, 주정차 과태료 123,584건을 부과하였고 순찰시 안전활동도 병행해 교통시설 107건, 생활불편요소 138건 개선

### ○ 지역축제 및 행사관리와 관광지 질서유지로 도민의 문화체육활동과 관광객 유치에 기여

- 지역축제 및 행사관리를 연간 200회 이상 수행하고 각종 국가행사 경비도 담당
- 관광경찰은 주요 관광지와 공항 등에서 관광객 보호와 질서유지를 하고 있고, 기마경찰대는 치안활동과 함께 승마 체험교실 등을 운영해 관광객 유치에 기여

### ○ 특사경은 환경·산림사범과 식품·위생 사범 등 제주 맞춤형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첨단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중임

## □ 운영상 한계

### ○ **조직·인력의 절대적 부족** ⇒ 독자적 경찰활동이 사실상 불가

- 국가경찰이 그대로 존재하고 부가적으로 중복·설치되어 인원 및 조직이 미약
- 현원(125명) 자체가 제주지역 국가경찰(1,583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제주도 인구(약 65만)에 대응한 실질적 치안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움
- 특히 기본치안활동을 담당하기 위한 **하부조직(지구대)이 없어 사고나 재해에 대응 불가**
  - ▷ 치안센터 4곳이 있으나 지구대와 같은 상시근무가 아닌 관광지순찰을 위한 순회사무소

<제주 자치경찰 사례>

- ◇ 자치경찰의 사무 자체가 관광지나 학교 등에서 지역적이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치안활동(방범순찰)을 제공하는 지역거점형 지구대가 없음
- ◇ 4곳의 치안센터는 상시 근무소가 아니라 단순 순회소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내 재난재해, 사건발생 등에 대한 즉각적 대응불가(112와 같은 대표전화 부재)

○ **협약에 따른 사무범위 확정** ⇒ **장소와 시간제약으로 제한된 사무 수행**

- 법령상 사무가 생활안전 등의 사무로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91조에 따라 **협약에 의해 자치경찰의 구체적인 사무범위와 수행방법이 제한(붙임 2(p21))**
  - ▷ **장소적 제한** : 공항 및 항구, 주요관광지, 올레길,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지역 행사장, 한라산, 민속 5일장, 제주도 본청 및 공공시설
  - ▷ **시간적 제한** : 운행시간 또는 개장시간으로 한정
- 이에 따라 국가경찰 대비 자치경찰활동은 30%미만 수준에서 머물고 있음
  - ▷ 주요 도심지 순찰(4,5%), 교통순찰(1.2%), 관광지 순찰(13.7%), 관광사범 단속(51%), 학교방범(14%), 공항검색대(40%) 등

<제주 자치경찰 사례>

- ◇ 공동사무로 규정하거나 협약에 의한 사무 배분으로 행사장 및 주요 관광지 교통정리, 재해재난 업무 등을 인력과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치경찰로 떠넘기는 사례 빈번
- ◇ 공항과 관광지가 협약상 자치경찰의 사무 수행지라는 이유로 우도·성산일출봉 등 관광지의 교통민원, 제주공항의 범죄수사경력 조회 등을 자치경찰에 모두 전가

○ **일반 수사권한의 부재** ⇒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권력적 경찰작용 불가**

- 자치경찰의 사무가 생활안전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및 수배자에 대한 체포권한이 없어** 주민을 위한 민생치안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 ▷ 제주특별법에 의하면 무기의 휴대 및 사용도 국가경찰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현행범인 경우 체포할 수 있지만 체포후에는 즉시 경찰서에 인계하여야 함

-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권이 없고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수사 및 송치권이 부재**
  - ▷ 교통안전 및 단속을 자치경찰의 사무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은 음주운전의 단속에 대해 자치경찰의 업무수행을 배제
  - ▷ 특사경 등 제한된 업무에 대한 수사권만 있어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 단속 중 공무집행방해를 당해도 직접 수사를 할 수없고 국가경찰에 요청해야 함

**<제주 자치경찰 사례>**

- ◇ 자치경찰을 경찰관으로 인정하지 않아 교통단속, 조류독감 의심 농가 수색, 컨테이너 및 운송차량 항만 검색 등에서 대상자들이 반발
- ◇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사범에 대한 체포와 수사권이 없어 자존감 및 사기 저하. 공항 등 단속현장에서 폭행, 흉기 위협 등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 특히 현행범 체포후 국가경찰에 사건 및 신병 인계처리 시는 자치경찰도 함께 피해자 조서를 받아 사기 저하
- ◇ 특사경 활동 중 일반범죄가 포함된 경우나 공무원 범죄 등이 발견되어도 수사권한 부재로 더 이상 수사가 불가하고 국가경찰에 인계시는 고발인 조사를 받아야 함

○ **안정적 재정확보 미비** ⇒ **국비지원이 제한되어 인력확보와 운영에 차질**

- 국가균형특별법상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만 국비로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추가 인력은 도비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충분한 재정지원이 없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자치경찰의 서비스가 떨어질 수 밖에 없음

**<제주 자치경찰 사례>**

- ◇ 자치경찰 신규채용 인건비가 없어 창설시 정원 127명을 채용하기 위해 무려 11년이 소요. '06년 45명 신규채용 이후 중앙부처 지원부족으로 4년간 신규채용을 못함
- ◇ 자치경찰 청사가 협소하고 이원화되어 있어 청사일원화를 추진했지만 국비지원을 못받아 추진하지 못함(기획재정부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경찰청은 자치경찰 증축사업비가 경찰청 총 증액한도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거부)
- ◇ 무기탄약고 없어 국가경찰에 위탁보관하고 있었으나 협소하다는 이유로 이송 요청해 자치경찰 본청이 아닌 서귀포 지역경찰대에 보관중

## □ 그간의 경과

## ○ 정부 및 경찰청

-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100대 국정과제중 하나로 선정('17. 7월)
- ▷ '17년 관련 법률 제개정→ '18년 시범 실시→ '19년 전면실시 로드맵 제시
- 경찰청 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외국 사례 및 모델 분석, 전국의 현장 경찰관 의견청취(4개 권역별 간담회) 등을 거친 후, 경찰청 권고안 발표('17.11월)

## ○ 우리 시

- 자치경찰시민위원회 구성('17. 8월)후 '서울시 차원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기본원칙' 마련('17. 10월)(붙임4(p25))
-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시행(~'17. 12월)

## □ 주요 동향

## ○ 경찰청 : 권고안 발표후 우호여론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관련기관 동향파악 중

- 경찰청 권고안이 제주자치경찰의 확장판으로 기대에 못미친다는 여론을 의식해 시도별 순회 설명회 개최 예정(세종시 등)
- 수사권 독립을 위해 '자치경찰제'(조직·사무 이관)와 '국가수사본부 설치'(정치적 중립성) 등을 발표하며 여론 동향 주시

## ○ 정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BH 중심으로 정부안 검토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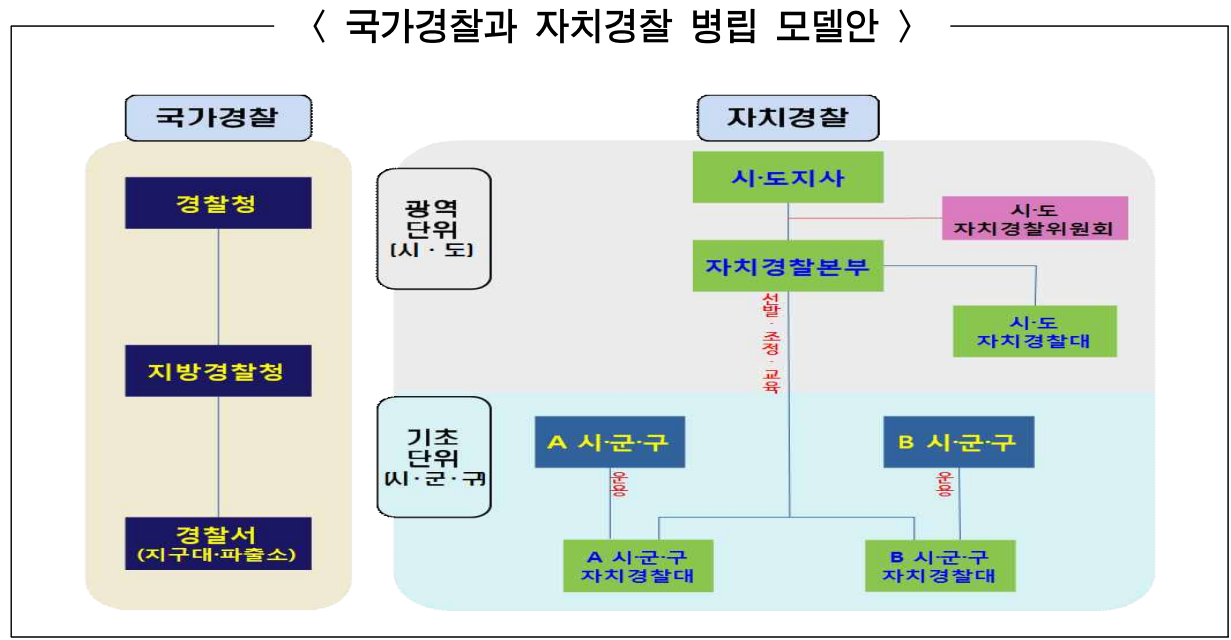
- 경찰청 권고안을 기반으로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해 행안부 자치분권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BH 정책기획비서관실을 중심으로 정부안 검토중

## ○ 시도협 및 타지자체 : 시도협을 중심으로 시·도 공동 대응 준비중

-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음
- 시도협은 시도의견 수렴을 위해 12월중, 17개 시도를 모아 경찰청 개혁위 인사로부터 권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의견 수렴예정(12.18예정)

# VI 경찰청 자치경찰 권고안과 평가

□ 조직 : 현행 국가경찰 존치 + 시·도에 자치경찰 ‘신규 창설’



- 현행 국가경찰 조직을 그대로 둔 채로 지방자치경찰을 중복해 설치
  - 경찰서 및 파출소(지구대) 등 국가경찰의 일선 하위조직을 유지하면서 광역단위 지방경찰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 제주경찰과 유사
-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광역 자치경찰제 시행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로 시도별로 자치경찰본부를 뒤 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하부조직으로 시군구에 자치경찰대를 설치하는 형태

◇ 중복설치로 주민에게 풍부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 ◇ 사무와 지역의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간 분쟁발생과 주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음. 별도 인력과 시설 설치에 세금낭비 야기

□ **사무 : 일부 수사권이 부여되었으나 분담범위와 방식 불명확**

-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을 자치사무로 하고 일부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
  - 기본적인 자치경찰사무로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특별사법 경찰 등 규정
  - 종전 제주 자치경찰에는 없었던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과 학교폭력·성폭력·가정폭력 등 일부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
- 위 사무는 자치경찰이 우선 처리하되, 필요시 협약으로 사무수행의 범위 확정
  - 필요한 인력·기술·재정이 미비하거나, 기타 장애요인이 있는 경우 다른 일방이 지원하고 전국적인 치안서비스 형평성을 위해 사무수행의 범위를 협약으로 규정
  - 특히 구체적인 수사 범위도 지방경찰청과 지자체간 업무협약으로 정하도록 함

⇒ ◇ 공무집행방해와 성폭력 등 일부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였으나,  
◇ 구체적인 사무와 수사권의 범위를 협약으로 확정하기로 해 사무의 범위와 수행방식이 제한되어 자치경찰의 권한을 형해화할 가능성이 큼

□ **인력 : 시·도가 신규선발, 지방공무원이되 처우는 국가와 동등**

- 시·도에서 신규로 일괄선발해 배치하고 일부는 국가경찰에서 이직
  - 시·도에서 일괄선발해 시·도가 직접운용하거나 산하 시·군·구에 배치하되, 출범 초기에는 국가경찰에서 희망 경찰관을 이직해 선발
- 신분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보수·근속·수당 등에 있어서 국가 및 타 지자체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 통보

⇒ ◇ 인력선발의 자율성을 주고 자치경찰 동등대우 원칙을 선언했으나,  
◇ 인력 선발과 대우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사실상 자치경찰 운용관련 막대한 신규비용 발생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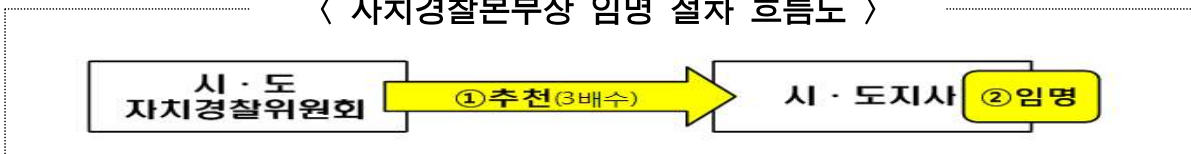
□ **인사 :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경찰본부장 등을 임명**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

- 자치경찰위원회는 정당 소속이 아닌 지역주민, 시민사회 인사, 치안관련 전문가 중 시·도지사<sup>와</sup> 시·도 의회가 추천한 자로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 임기는 3년으로 하고(≠자치단체장 임기),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 규정 마련

○ **자치경찰본부장은 자치경찰위원회의 3배수 추천자중 시·도 지사가 임명**

〈 자치경찰본부장 임명 절차 흐름도 〉



- 중립성을 확보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임기는 2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대장은 자치경찰본부장이 시·군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추천한 자 중 시·도 지사가 임명

⇒

- ◇ 정치권이나 지역토착세력에 의한 독립성 훼손을 막는 효과가 있으나,
- ◇ 합의제의 성격상 **효율적이고 신속한 경찰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음**

□ **재정 : 원칙 시·도가 부담. 이관된 인력 및 일부 장비 국가지원**

-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신규채용인력 및 시설에 대한 부담**을 지되, 국가로부터 이관된 인력이나 필요한 일부 장비에 대해 국가 지원
- 기존 지구대(파출소) 등 국가경찰 건물에 대해 **공동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

- ◇ 이관 인력과 장비 및 균형적 치안서비스를 위한 국가지원을 언급했으나,
- ◇ **새롭게 채용된 자치경찰 인력과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은 명시되지 않음.** 또한 국가 경찰건물 **공동사용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

VII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 현황

자치경찰의 분권성 정도

분권적 ←

→ 집권적

미국	영국	독일	구분	일본	스페인	프랑스
연방수사국 출입국사무소 연방교정국 등	국가범죄대 (NCS) 국가범죄 정보원 등	연방범죄수사국 연방헌법보호국 연방정보국 등	국가경찰	경찰청 7개 관구경찰국 등	국가일반경찰 국가군경찰 등	국가일반경찰 국가군경찰
12,666개 지방(카운티, 타운)경찰서 ,세리프경찰서 ,주경찰	43개 지방경찰청	16개 주경찰 질서행정청	자치경찰	47개 광역(도도부현) 경찰	3개 광역(주)경찰 기초경찰	약 3,000개 기초(교문)경찰
전체 광역 전체 기초	전체 광역	전체 광역	실시단위	전체 광역	일부 광역 기초 중심	기초
주, 카운티, 시 등 모든 자치계층에서 자치경찰 운영	카운티 단위의 지방경찰위원회 에서 지방경찰청 관리	주 단위 자치경찰이 운영되고, 질서행정청에서 특별사법경찰 역할 수행	개요	국가·자치경찰 통합형으로 자치경찰은 국가·지방공무 원으로 구분	예외적으로 3개 주 자치경찰 운영. 기초 자치경찰이 활발	기초자치계층에 서 자치경찰의 설치·운영
자치경찰	자치경찰	자치경찰	경찰력의 근간	자치경찰	국가경찰	국가경찰
유	유	유	사법경찰권 유무	유	유/무	무
협력적 /연방경찰 권한 강화	협력적 /내무부 통제 강화	협력적 /국가경찰역할 확대	국가경찰과 의 관계	통합적 /경찰청의 실질적 지배	협력적 /자치경찰역할 확대	협력·수직적 /기초경찰 확대
			비 고	국민의 정부 자치경찰 모델(1999)	참여정부 자치경찰모델 (2004, 제주 자치경찰)	



## □ 프랑스 경찰제도 ※ 스페인 유사

### ○ 특성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 기초단위 자치경찰

-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에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도를 부분적으로 가미
- 국가경찰은 국립경찰(인구 2만 이상)과 군인경찰로 이루어지고(2만 이하), 자치경찰은 주로 기초자치단체인 ‘꼬문’에 설치되어 운영

### ○ 자치경찰의 특징

- 조직(도입단위) : 원칙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장은 도지사의 행정통제하에 자치경찰을 만들 수 있으나, 주로 꼬문이라는 기초 단체에서 설치, 운영
- 인사 : 국가경찰과의 인사교류는 없고 자치단체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집·선발
- 사무 : 국가경찰에 비해 제한적이고 국가경찰과의 협약에 의해 조정. 범죄예방 순찰, 기초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고 독자적인 수사권 부재

### ○ 국가경찰과의 관계

- 내무부 소속의 ‘자치경찰 자문위원회’가 자치경찰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자문하고 필요시 직접 감사
- 자치경찰은 관할 국가경찰에게 인지한 모든 범죄를 즉각 보고해야 하고, 긴급사태시 도지사는 자치단체장을 대신함

### ○ 시사점

- 자치경찰은 제한된 사무와 권한으로 국가경찰의 치안보조자에 불과
- 제주 자치경찰이 프랑스·스페인 등의 유럽식 자치경찰제를 도입했으나, 실질적인 역할 미비, 중복 설치로 인한 혼란과 비용발생 등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평가

## □ 미국의 경찰제도

- 특성 : 자치경찰이 주로 치안담당(국가경찰 예외). 광역·기초 자치경찰
  - 치안은 기본적으로 주(State), 시(City), 군(County), 읍(Town)의 자치경찰이 담당. 자치경찰간 역할분담은 각 주마다 다르며, 그 형태와 역할이 매우 다양
  - 연방경찰은 마약, 테러, 화폐위조, 전국적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 재무부, 내무부 등 각 부처에 설치되어 필요한 영역에 한해 권한 행사

### ○ 자치경찰의 특징

- 조직(도입단위) : 광역과 기초단위에 모두 자치경찰이 설치되어 있음
  - ▷ 주경찰은 주에 따라 상이하하나 크게 주경찰국, 주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로 구성
  - ▷ 지방경찰은 카운티, 시, 타운 등의 경찰을 통칭. 각 지자체마다 그 형태가 다양하고 업무가 복잡. 카운티 보안관, 카운티 경찰, 도시경찰, 특별구역 경찰 등
- 인사 : 경찰기관의 장을 선출하여 관리하는 방식, 합의제 경찰위원회를 선출하는 방식, 시의원 중 경찰담당 의원이 관리하는 방식 등 매우 다양
- 사무 : 지방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모든 경찰사무 담당. 연방은 예외적 개입
  - ▷ 주경찰은 일반적인 수사권을 보유하고 지방경찰 지원
  - ▷ 카운티 보안관(군지역), 카운티 경찰(시군 병합지역), 도시경찰(뉴욕 등 대도시)이 지역내 모든 경찰사무 담당

### ○ 시사점

- 현재의 미국 경찰제도는 넓은 국토와 자발적 치안 확보의 필요성 등 **미국 특유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정착**
- 자치경찰이 가장 발달되어 있으나,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국가경찰에 대한 치안만족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부적절**

## □ 일본의 경찰제도

### ○ 특징 : 국가경찰(중앙)과 자치경찰(광역이하)이 통합. 광역단위 자치경찰

- 도도부현이하 자치경찰이 경찰사무 담당. 국가경찰은 예외적으로 개입
- 국가경찰은 전국적으로 대처할 사항만을 관장. 경찰청과 관구경찰국(전국 7개)이 있으며 공안위원회의 통제를 받음

### ○ 자치경찰의 특징

- 조직(도입단위) :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는 도도부현에 경찰 설치(동경도 경시청, 도부현 경찰본부). 경시청장과 도부현 경찰본부장이 경찰서 지휘·감독
- 인사 :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지사의 소관하에 있으나 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지않고 도도부현 경찰을 관리·통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 유지
- 사무 : 기본 사무는 모두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며 자치경찰이 수사권 보유. 국가경찰은 전국적 관점에서 대처할 사항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수행

### ○ 국가경찰과의 관계

- 경찰청은 도도부현 경찰에 대해 포괄적이고 강력한 지휘감독권은 없고 훈령에 의한 지휘·감독이나 구체적 사항에 대한 보고 등 간접적 관여만 인정
- 재정관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국가의 관여를 인정

### ○ 시사점

- 일본은 과거 중앙집권적 경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권한을 강화
- 내각의 지시를 받지 않는 공안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국가지방의 일원적 통합체제 구축으로 경찰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 담보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시사점을 제공

## &lt; 기본 원칙(방향) &gt;

## ①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달성 ② 주민체감 치안서비스 증대

① (단위) 신속하고 균질적인 경찰 서비스 제공 → **광역단위 자치경찰 도입**

- 좁은 국토, 교통·통신의 발달, 광역적 범죄의 증가 등은 광역단위에서의 조정 필요성을 증대. 특히 광역 자치경찰은 기초단체간 치안 불균형을 완화

(조직) 주민 혼란의 최소화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일원화(병존×)**

-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병존시 주민의 입장에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 초래.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관할권 갈등과 책임회피 초래

② (사무) 원칙, 모든 경찰사무는 자치경찰 → **예외적으로 국가경찰사무 인정**

-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경찰사무는 주민과 가까운 자치경찰의 사무로 함. 다만 대공, 정보, 외사, 전국적 사건 등 예외적 국가경찰 사무 인정(국가사무 열거주의)

(권한) 범죄예방과 수사의 연속성 → **자치경찰의 수사권 인정**

- 교통, 방범 등 분야에서 범죄예방과 수사는 연속성 상에 있는 것으로 불가분의 관계임. 자치경찰에게 주어진 사무는 수사권을 부여해야 함

③ (인사)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시·도 경찰위원회의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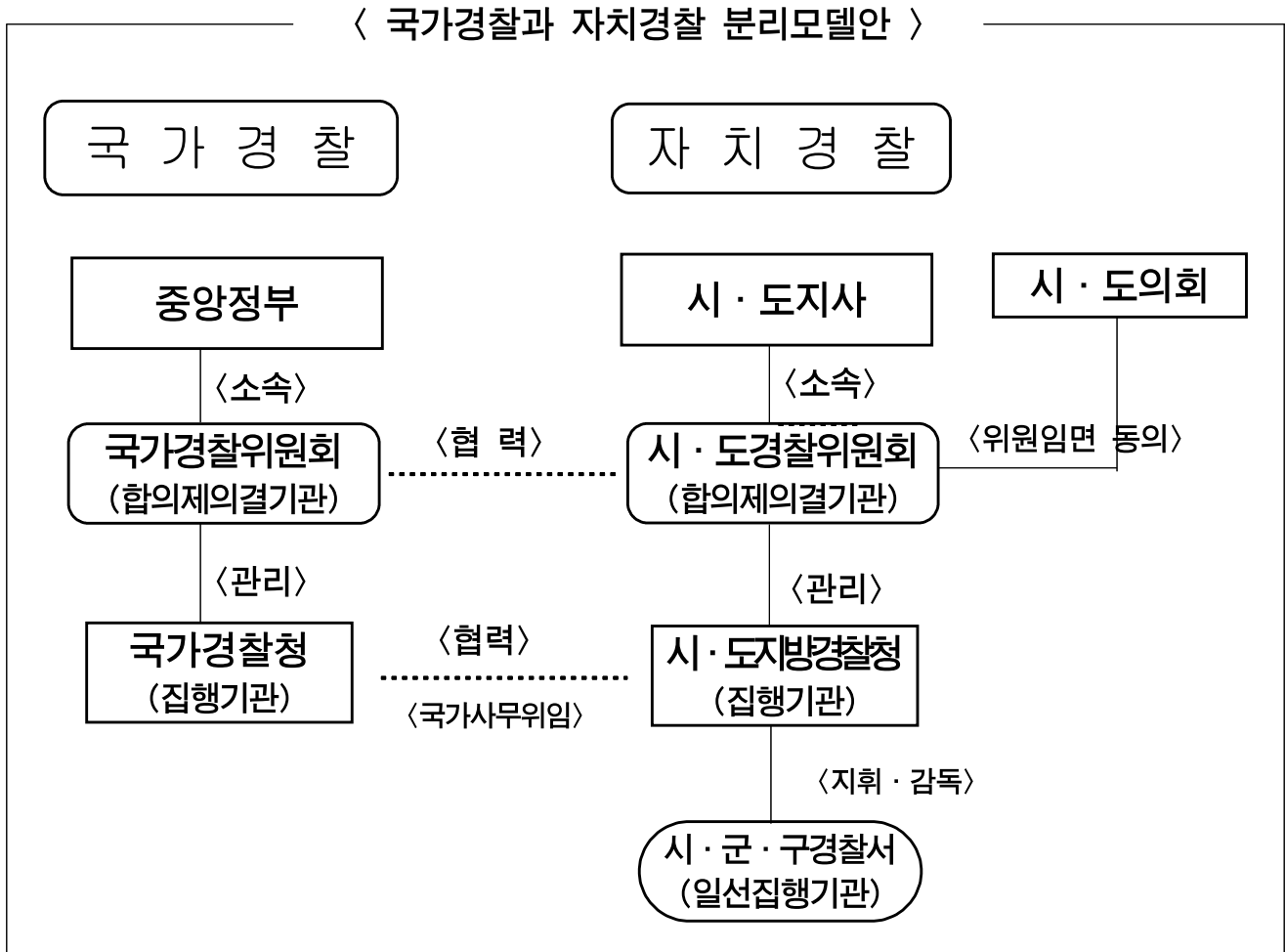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제 기관인 위원회를 두고 경찰 인사, 재정 등을 통제

④ (재정) 새로운 주민 부담의 최소화 → **기존 국가 경찰예산 활용**

- 자치경찰 시행으로 새로운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최소화. 초기에는 기존 국가경찰 예산을 활용하되, 장기적으로 지방세 등 자주재원 확대로 지방부담

## <바람직한 서울시 자치경찰 모델(안)>

### 1 조직(단위) : 지방경찰청 이하 자치경찰로 이관. 광역단위 도입



### ○ (추진논거) 주민혼란과 비용 발생 최소화, 광역적 경찰 수요 반영

- 전국단위 경찰청을 제외하고 광역단위 이하는 자치경찰만 설치해 경찰체제를 일원화함으로써 경찰 서비스 이용에 주민의 혼란과 치안 공백을 최소화

※ **현행 경찰법 제2조 취지를 충실히 반영**

: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하에 경찰서를 둔다

- 광역단위로 권한 및 역할을 집중화해 광역과 기초 분리로 인한 비효율과 치안 불균등성을 완화

○ (추진모형) 지방경찰청 이하 자치경찰로 이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경찰청을 제외하고 지방경찰청 이하 모든 경찰조직을(경찰서 및 파출소 포함) 자치경찰로 전환. 별도 자치경찰 신설 불필요
- 광역단위의 시·도 경찰청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서 이하는 시·도 경찰청의 집행기관 역할 강화(경찰서장은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시·군·구청장 협의))

2 **사무·권한 : 원칙 자치경찰사무, 예외 국가사무. 자치경찰 수사권 부여**

○ (추진논거) 주민과 가장 가까운 자치경찰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취지에 맞게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과 가장 가깝고 밀착되어 있는 자치경찰이 모든 경찰사무 수행
- 현장에서의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수사권 필요

○ (추진모형) 국가안보, 국제범죄, 전국적 사건 등 제외한 모든 경찰사무 이관. 수사권 부여

- 자치경찰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범죄를 포함해 생활안전, 교통, 경비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치안서비스를 제공
- 국가경찰은 기본적으로 대공, 정보, 마약, 테러 등 국가안보와 국제범죄, 전국적 범위의 강력 범죄만 담당. 자치경찰과는 지원과 협력관계 유지
- 자치경찰에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현장에서 즉시 대응 가능하도록 조치

3 **인사 : 독립성을 확보한 ‘경찰위원회’에 의한 경찰기관 통제**

○ (추진논거) 역대 경찰이 겪고 있는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오해 극복

- 독립성을 확보한 「합의제 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

○ (추진모형)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 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청 통제

- 시·도 경찰위원회는 시의회와 시장 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갖고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
- 시·도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추천으로 시·도 지사가 임명하고 경찰서장은 시·도 경찰청장의 추천으로 시·도 지사가 임명(필요시 시·군·구청장과 협의)

4 신분·재정 : 지방공무원. 기존 국가예산 활용후 지방세 등 인상

○ (추진논거)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추가적인 재정부담 최소화

- 지방경찰로서 자부심을 갖고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공무원화
- 자치경찰 시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필요

○ (추진모형)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고, 국가재정 지원 및 지방세제 개편으로 총당

-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보수·근속·수당 등 대우에 있어서 국가 및 타지자체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조치
- 범칙금·벌금 등 세외수입을 발굴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자주재원 마련

〈서울지방경찰청 조직도〉



지방경찰청계	2,247
홍보담당관실	52
감사담당관실	67
경무부	162
생활안전부	561
112상황실	182
생활안전과	48
생활안전계	18
한강경찰대	30
생활질서과	59
생활질서계	11
풍속단속계	48
여성청소년과	84
여성보호계	32
아동청소년계	36
여청수사계	21
지하철경찰대	183
수사부	593
교통지도부	204
교통관리과	37
교통기획계	14
교통시설운영계	14
면허계	9
교통안전과	167
교통안전계	12
교통조사계	16
종합교통정보센터	20
교통순찰대	110
도시고속순찰대	9
경비부	122
정보관리부	103
보안부	383
경비직할대계	4,283
경찰서계	20,557
본서	10,250
특수부서	94
지구대	9,968
기동순찰	245



##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90조(사무)

자치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이하 "자치경찰사무"라 한다)를 처리한다.

#### 1.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 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 운영
- 나. 주민참여 방법활동의 지원 및 지도
- 다.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등으로부터의 주민보호
- 라.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보호와 가정·학교 폭력 등의 예방
- 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와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 2.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 가. 교통안전과 교통소통에 관한 사무
- 나.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 다.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지도

#### 3. 공공시설과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경찰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 5.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등에 따라 「도로교통법」 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

### 제91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 ① 제90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제94조에 따른 치안행정위원회(이하 "치안행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에 관한 업무협약안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하 “제주지방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협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업무협약안을 작성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지방경찰청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의 체결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도보에 게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1조에 따른 업무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경찰의 활동 목표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행할 사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
3. 인력 및 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상호 협력과 응원에 관한 사항
5. 업무협약의 유효 기간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국가경찰과의 사무분담 기준)** 법 제91조제4항에 따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에 사무를 분담할 때에는 주민의 안전 및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주민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상호 부여된 권한을 존중하고 협력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주의 지역적 특성 및 요일별, 계절별 특수성
2. 중복되는 업무의 최소화를 통한 경찰력의 효율적 운영
3. 주민 및 방문 내·외국인에 대한 치안 서비스의 증대

**제5조(사무수행 방법의 기준)**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방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율적인 사무 수행을 위한 중점 활동 지역 선정 및 운영
2. 치안의 수요, 인력, 보유 장비 등을 감안한 근무 시간과 근무 방법 선정
3.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유기적인 협조

②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예정된 특수한 치안 수요에 대비하여 서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협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 3.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관 협약 : 장소적, 시간적 제약

제4조(자치경찰 사무의 중점 수행 장소 및 시간) 자치경찰은 법 제 10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1. 제주국제공항과 제주항 도착장 일반 대합실, 여객주차장, 공항·만내 준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 이 경우 사무 수행시간은 여객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시간에 한한다.
2. 별표 1에 규정된 주요 관광지. 이 경우 사무수행 시간은 관광지의 개장시간에 한한다.
3. 별표 2에 규정된 올레길,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4. 문화축제, 체육행사 등이 개최되는 지역 행사장. 다만, 자치경찰 경력만으로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경찰과 사전 협의 할 수 있다.
5. 한라산 어리목, 영실, 성판악, 관음사 등산코스
6. 별표 3에 규정된 민속 5일장. 이 경우 사무수행 시간은 5일장의 개장시간에 한한다.
7. 시내권 동지역 교통혼잡 지역 등에 대한 주·정차 지도단속 등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무
8.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를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이 입주하거나 사용·관리하는 공공시설

분 야	사무	소관 실국본부
수 사	(1) 폭행사건 관련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소 방 재 난 본 부
	(2) 신·변종업소 및 온라인 성매매 감시	여 성 가 족 정 책 실
	(3) 건설업 면허대여 및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조사	주 택 건 축 국
	(4) 민생침해 불법 건축현장 조사	주 택 건 축 국
교 통	(5) 교통안전시설 설치 결정 서울시 이관	도 시 교 통 본 부
	(6) 소방관서 앞 교통신호기 교통지시 표지판 설치	도 시 교 통 본 부
	(7) 교통신호 운영 일원화	도 시 교 통 본 부
	(8) 운행제한 차량 단속	안 전 총 괄 본 부
여 성 · 청 소 년	(9) 여성 안심지킴이집 운영	여 성 가 족 정 책 실
	(10)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여 성 가 족 정 책 실
	(11)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 성 가 족 정 책 실
	(12)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평 생 교 육 국
	(13)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 성 가 족 정 책 실
	(1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행 정 국
방 범	(15) 자율방법대 시민 참여 치안	행 정 국
	(16) 지하철 보안관·경찰 협업 강화	서 울 교 통 공 사
	(17) 서울 관광경찰대 사무 이양	관 광 체 육 국
생활안전	(18) 학교전담경찰관 사무 이양	평 생 교 육 국
	(19) 서울시 자살예방사업	시 민 건 강 국
	(20) 고독사에 대한 통계자료 마련	복 지 본 부
	(21) 반려견주 지도·단속	시 민 건 강 국

## □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17.10.18. 발표)

**< 자치경찰의 가치와 목표 >**

자치경찰은 시민에게 친근한 우리 지역의 경찰로서, 지방자치단체 종합행정과의 유기적인 조화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종합치안서비스를 보다 촘촘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자치경찰은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현되어야 하며, 시민의 신뢰와 지지,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2.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이념에 입각하여 독립적으로 구성·운영하고, 국가경찰은 국가치안을, 자치경찰은 지역치안을 전담하되, 범 죄의 수사과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4. 자치경찰을 실시하기 위한 새로운 인적·물적 시민부담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5. 자치경찰은 시민과 친근한 인권보호 경찰이 되어야 한다.
6. 자치경찰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7. 자치경찰은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치안문제를 시민과 함께 해결하여야 한다.
8. 서울시 자치경찰은 모범적 모형을 창출하여 지방경찰제도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17.10.20. 기준, 단위:명)

□ 서울시(자치구 포함) 특사경 인력 : 총 834명(시 508, 자치구 326)

○ 서울시 : 508명

- 민생사법경찰단 : 112명(시 61, 자치구 파견 51)

※ 민생사법경찰단장(3급)은 특사경 제외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

- 기타부서 및 사업소 : 396명

계	공원녹지 정책과 (녹지사업소 포함)	서울 대공원	시설안전과	도로사업소 (6개)	교통 지도과	공정 경제과	38세금 징수과	소방재난 본부 (소방서포함)
396	54	12	3	14	18	15	37	243

※ 도로사업소(14) : 동부(2), 서부(3), 남부(2), 북부(2), 성동(0), 강서(5)

○ 자치구 : 326명

구 명	인원	구 명	인원	구 명	인원	구 명	인원	구 명	인원
종 로 구	11	동대문구	7	노 원 구	11	강 서 구	10	관 약 구	11
중 구	35	중 랑 구	10	은 평 구	6	구 로 구	15	서 초 구	30
용 산 구	14	성 북 구	6	서대문구	26	금 천 구	14	강 남 구	19
성 동 구	21	강 북 구	7	마 포 구	10	영 등 포	8	송 파 구	13
광 진 구	7	도 봉 구	13	양 천 구	7	동 작 구	10	강 동 구	5

□ 서울시 특사경 세부 직무 범위 : 12개 분야, 55개 법률

지명분야	직무내용	직무관련 법률
대부업 판 및 매	▶대부업·방문판매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사업 육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화 장 품	▶안전한 화장품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화장품법
의 료 기 기	▶안전한 의료기기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의료기기법
석유 및 자동차	▶시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 (가짜석유 유통, 무등록 석유판매, 무등록 불법정비 등)	○ 자동차관리법(무등록 자동차정비업 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식 품 위 생	▶부정식품 추방으로 시민체감 먹거리 안전 확보 (식품생산→제조→유통 등 위해여부, 위생관리 등)	○ 식품위생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범죄) ○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원 산 지 표 시	▶식품·농수산물, 공산품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 해소 (농·수산물·공산품 원산지허위표시, 인삼·양곡 불법판매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양곡관리법 ○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공 중 위 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 (공중위생업소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위생상태 등)	○ 공중위생관리법
의 약	▶가짜 의약품 등으로부터 시민건강 확보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 불법유통 등)	○ 약사법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 범죄)
환 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맑은 환경 보전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보전위반행위 등)	○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화학물질관리법 등 32개 법률
청 소 년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탈선예방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유해업소출입·고용위반 등)	○ 청소년 보호법
개 발 제 한 구 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생활공간 조성 (무허가 건축, 공작물 설치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표 권 침 해 및 부 정 경 쟁 행 위	▶위조상품 제조·판매 근절로 상품신뢰도 제고 (상표·상호 도용 등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 등)	○ 상표법(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